1. 제정이유

지역축제장의 LP가스 사용시설은 건축물이 아닌 개방된 장소에 설치되는 특성상 현행 안전기준 적용이 곤란함에도 일반 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므로, 임시 사용시설인 지역축제장의 특성을 반영한 시설·기술·검사기준을 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고시 제정 목적(안 제1조)

- 지역축제장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안전유지 및 가스사고 예방

나. 지역축제장의 정의(안 제2조)

- ‘지역축제장’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관하여 개최하는 행사로서,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축제로 정의

다. 고시의 적용범위(안 제3조)

- 3개월 이내의 지역축제장의 사용시설에서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에 적용함

라. 완성검사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(안 제4조)

-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완공도면과 시공현황을 첨부하여 해당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사용 시작 7일 전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도록 함

마. 지역축제장 LPG 사용시설의 시설·기술·검사기준(안 제5조)

- 지역축제장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・기술・검사 기준은 별표에서 정하도록 함

바. 기준의 준용(안 제6조)

-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함

사. 재검토기한(안 제7조)

- 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설정함

아. 지역축제장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·기술·검사기준(안 별표)

- 지역축제장 LPG 사용시설의 저장설비·가스설비·배관·연소기 등의 시설기준과 안전유지·점검·수리·청소·철거 등에 필요한 기술기준 등을 정함

자. 완성검사 신청서 및 증명서 서식(안 별지 제1호, 제2호 서식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 또는 직접 작성 또는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 또는 X년 예산에 X억원 반영되었음

다. 합　　의 : 해당기관 없음 또는 0부, 0실과 합의되었음

라. 기　　타 :

고시 제 호

지역축제장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안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지역축제장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안전유지 및 가스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“지역축제”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관하여 개최하는 행사로서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의11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축제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① 이 고시는 지역축제장에서 임시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중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0조제2항나목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와 같은 조항 제9호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의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. 다만,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0조제2항의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,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또는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와 이동하면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.

② 이 고시는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지역축제장의 사용시설에 적용하며,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사용기간은 축제기간으로 한다.

제4조(완성검사)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스시설을 시공한 가스시설시공업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44조제2항에 따라 이미 완성검사를 받은 시설은 제외한다.

② 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완성검사 신청서에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완공도면과 시공현황을 첨부하여 해당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사용 시작 7일 전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완성검사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.

제5조(시설·기술·검사 기준) 지역축제장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·기술·검사 기준은 별표와 같다.

제6조(기준의 준용)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

른다.

제7조(재검토기한) 산업통상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지역축제장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신청하는 축제장부터 적용한다.

[별표]

지역축제장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·기술·검사기준

1. 시설기준

가. 저장설비기준

1) 저장설비는 500kg 이하의 용기로만 설치할 것.

2) 용기(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와 내용적 1L 이하의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기는 제외한다)는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둘 것

3) 2개 이상의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옥외에 설치한 용기보관실 안에 설치하고, 1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도방지조치를 할 것

4) 용기보관실은 불연재료를 사용하는 등 그 용기보관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

5) 용기, 용기밸브 및 압력조정기는 직사광선, 눈 또는 빗물로부터 위해가 미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할 것

나. 가스설비기준

1) 압력조정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

가) 사용시설에는 압력조정기를 설치할 것

나) 압력조정기의 입출구압력, 조정압력 및 최대유량은 연소기의 사용압력에 충분한 것으로 할 것

다) 용기에 직결하지 않는 형식의 압력조정기는 조정기의 입구부에

재액화된 액화석유가스나 이물질이 고이지 않도록 용기밸브 보다 0.05ｍ 이상 높게 설치할 것

2) 가스계량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

가) 사용시설에는 가스계량기를 설치할 것. 다만,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여 중량판매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스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.

나) 가스계량기는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하고, 열이나 진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등 가스계량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지 않을 것

다) 가스계량기는 밴드·보호가대 등 고정장치로 고정할 것. 다만, 설치높이는 제한하지 않는다.

3) 중간밸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

가) 가스사용시설에는 연소기 각각에 대하여 중간밸브를 설치할 것

나) 배관이 분기되는 경우에는 주배관에 배관용밸브를 설치하되, 조작이 편리한 위치에 설치할 것

다) 압력조정기 출구측 배관에는 압력조정기와 접하도록 배관용밸브 및 압력측정기구 접속 이음관(이하 “가압구”라 한다)을 설치할 것.

라) 2개 이상의 천막 또는 영업장으로 분기되는 경우에는 각 천막 또는 영업장의 주배관마다 배관용밸브를 설치할 것

4) 호스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

가) 호스의 길이는 3m 이내로 설치하고, T형으로 연결하지 않을 것

나) 호스와 중간밸브 등 및 연소기와의 접속부분은 호스밴드 등으로 견고하게 조일 것

다) 호스는 통로에 설치하지 않을 것. 다만, 보행자의 통행으로 인한 손상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고정목이나 방호철판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통로에 설치할 수 있다.

라) 호스는 노출하여 설치하고 다른 천막 또는 영업장의 시설과 연결되지 않을 것

다. 배관설비기준

1) 사용시설의 배관은 강관·동관으로 할 것. 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다.

가) 저장설비에서 압력조정기까지: 일반용 고압고무호스(트윈호스·측도관 만을 말한다)로 설치

나) 중간밸브에서 연소기까지: 호스 또는 연소기용 금속플렉시블호스로 설치

2) 배관은 노출하여 설치할 것. 다만, 다음의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는다.

가) 배관을 매몰하지 않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(은폐 설치를 말한다)

나) 하수구 등 암거 내부

3) 배관은 바닥 등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그 관경이 13mm 미만인 것은 1m마다, 13mm 이상 33mm 미만인 것은 2m마다, 33mm 이상인 것은 3m마다 고정장치를 설치할 것. 다만, 모래사장 등 배관 고정이 어려운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4) 보행자의 통행으로 인한 손상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고정목이나 방호철판 등으로 방호조치를 할 것

5) 연소기용 금속플렉시블호스(사용압력은 3.3㎪ 이하로 한다)는 다른 연소기용 금속플렉시블호스와 연결하지 않으며 절단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

6) 배관의 맨 끝 부분에는 플러그, 캡 또는 플랜지로 막음조치를 할 것

7) 배관은 부식방지 조치를 하고 표면을 노란색으로 표시할 것. 다만,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폭 0.03m의 노란색 띠를 2중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표면을 노란색으로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.

8) 배관이음부(용접이음매는 제외하고, 배관과 호스의 접속부를 포함한다)와 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cm 이상,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과의 거리는 15cm 이상, 절연조치를 한 전선(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한 전선은 제외한다)과의 거리는 10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

라. 연소기 기준

1) 연소기는 화재, 폭발 및 중독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시설의 안전 확보 및 정상작동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

2) 연소기는 법 시행규칙 별표 7 제4호차목에 따른 연소기를 설치할 것.

3) 개방형 연소기를 설치한 천막 또는 영업장에는 수시로 환기가 가능한 구조일 것

4) 가스보일러나 가스온수기 설치는 GC208에 따를 것. 다만, 반밀폐식 가스보일러(실내에서 연소용 공기를 흡입하고 배기가스는 실외로 배기하는 가스보일러) 및 개방형 가스온수기(실내에서 연소용 공기를 흡입하고 폐가스를 실내로 방출하는 가스온수기)는 설치하지 않는다.

마. 사고예방설비기준

가스의 누출 및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소기를 설치한 천막 또는 영업장에는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할 것. 다만,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.

1) 연소기가 연결된 각 배관에 퓨즈콕등이 설치되어 있고, 각 연소기에 소화안전장치가 부착된 경우

2) 가스누출경보기 연동차단기능의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가 설치된 경우

3)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여도 그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

바. 용품의 사용 제한

사용시설에 설치하는 제품이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및 법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

2. 기술기준

가. 안전유지기준

1) 충전용기의 밸브는 서서히 개폐하고, 밸브 또는 배관을 가열할 때에는 열습포나 40℃ 이하의 더운 물을 사용할 것

2)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로부터 2m 이내에서는 흡연 및 과도한 화기 사용 등 화재 및 폭발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할 것

3) 연소기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용기 분리 또는 접속을 하지 않을 것

4) 가스사용시설에 연결된 용기 외에 다른 용기를 두지 않을 것

나. 점검기준

가스사용자는 그 설비의 작동 상황을 1일 1회 이상 점검하고,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.

다. 수리·청소 및 철거 기준

가스시설을 수리하는 때에는 그 작업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, 작업후에는 그 설비의 작동성 확인 등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

3. 검사기준

가. 완성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·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으로 할 것

나. 완성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것

다. 이상의 검사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KGS FU431에 따를 것

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(http://cyber.kgs.or.kr/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(지역축제장) 완성검사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7일

※ 신청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전자우편주소는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이용됩니다.

신청인 (가스시설 시공업자)	상호:	등록번호:
	대표자:	사업자등록번호:
	사무소 소재지:	전화번호:
	전자우편주소:	검사 희망 연월일:

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	상호:	사업자등록번호:
	대표자:	전화번호:
	소재지:	
	전자우편주소:	

세부 내용	축제명	
	축제기간	
	관할 행정기관	

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44조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및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귀하

첨부서류	시설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완공도면과 시공현황 1부	수수료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60조제2항제9호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 수수료

처 리 절 차

신청서 작성	→	접 수	→	현지 검사	→	증명서 작성	→	통 보
신청인		한국가스안전공사		한국가스안전공사		한국가스안전공사		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제 호

완성검사 증명서

완성검사 대상 특정사용시설	상호(건축물 명)		대표자 성명	
	소 재 지			
가스시설 시공업자	상호(명칭)			
	등록번호		대표자 성명	
	소 재 지	(전화번호:)		
완성검사자	검사원 성명		검사 연월일	
	유효기한	(축제종료시까지)		

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44조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및 고시 제4조제4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완성검사 증명서를 발급합니다.

사 용 자	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35조제1항·제2항 및 제44조제1항에 따라 저장설비, 연소기, 가스설비, 배관 등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에 의한 적법시공이 요구되며, 사용자께서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.
시 공 자	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35조제2항에 따라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게 시공하여야 합니다.
공 급 자	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30조에 따라 공급자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.
검 사 자	이 검사증명서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에 대하여 검사자가 검사 당시의 기준에 근거하여 기준과 일치하지 않거나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.

※ 이 시설은 특례기준으로 완성검사를 실시한 시설로서 임의 변경하여서는 아니됨을 안내 드립니다.

검사기관 주소:

담당부서: 전화번호:

년 월 일

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직인

210㎜×297㎜(백상지 120g/㎡)